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 설치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93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 설치	2
※ 참고자료	
1. 방송영상진흥재단 참고자료	6
2. 방송영상진흥재단 사업별 참고자료	8
3. 방송영상진흥재단 출연기관 개요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22.

다. 회 부 일 : 2024. 8.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 설치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방송영상진흥재원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① 문</u> <u>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해 진흥원</u> <u>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u> <u>② 대출계정의 수입·운영·관리 등</u> <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나. 검토의견

개정안에 따른 대출계정의 주 재원인 방송영상진흥자원(2023년 말 기준, 약 286억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1996~97년도에 종합유선방송국 방송허가 선정 과정에서 방송 및 사회발전 기여계획 등의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조성되었음.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9년	총계
○ 지역민방 출연(5개사)	1,000	2,200	-	3,200
○ 2차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출연(24개사)	-	19,750	-	19,750
○ 舊 공익자금 ¹⁾ 출연	-	-	4,500	4,500
계	1,000	21,950	4,500	27,4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진흥재원 출연 이후, 동 재원은 방송영상물 등 프로그램 공급사에 지원하는 등 업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²⁾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정관³⁾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 시설구축, 경영지원 등을 위한 융자사업 등으로 재원을 집행하고 있음.

1) 1980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조성되어 방송광고 영업대행 수수료(광고비의 20%)를 재원으로 운용되다, 2000년 방송법 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

2)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출연받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이 2009년도에 통합하면서 설립되었음.

3)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단, "문화산업" 및 "콘텐츠" 등 다음 각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5. 문화산업발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5. 방송영상진흥재원

[2023년도 방송영상진흥재원 주요사업 내역]

구 분	방송영상진흥재원 용자지원	용자지원 운영	방송영상콘텐츠 연구조사
사업 목적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 및 케이블 TV업계 등에 저리 자금 공급을 통한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용자 지원 사업 운영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주요 내용	- 용자 지원(프로그램 제작자금, 시설구축 자금, 경영지원자금)	- 운영위 개최 등 사업 운영 실비(16백만원) - 한국케이블TV 방송 협회 지원(70백만원)	- 방송영상콘텐츠 연구조사(방송콘텐츠산 업포럼, 현안세미나 등)
예산	총 13,295백만원		
	13,015백만원	86백만원	194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2023년도 감사원이 실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6~1997년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유선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출연받았고, 이러한 재원을 예산 외 별도 재원으로 보유하면서 특정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가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용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보완을 하고 용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⁴⁾

4) 일반적으로 법률 내 계정설치 규정은 ① 특정 기금·특별회계의 한국은행 계정설치 명시, ② 기금 내 용도 구분, ③ 특정 사업을 위해 특정 기관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며, ③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음.

유사입법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방송법」 제92조⁵⁾에 따르면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⁶⁾ 중 방송과 관련하여서는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방송영상진흥재원으로 추진되는 융자사업 중 ‘시설구축’ 자금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출계정을 설치하게 되면 현행 방송시설 구축 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380

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보증수수료 등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참고 1

방송영상진흥재원 참고자료

□ 방송영상진흥재원 개요

- (주요 내용)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방송영상 산업 발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96년~, 現 콘진원 기본재산)
- (구성 경과) ①지역민방, 종합유선방송 2차 SO* 선정 평가('96.'97년/공보처) 시 '방송 및 사회발전 기여계획' 등 평가항목 근거, 각 업체가 자발적 계획과 약정에 의해 재원 출연** 및 ②舊 공익자금 출연('99년)

*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현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등)

** 현재 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방통위 소관)에 출연, 납부계획을 제출

- 약 **280억원** 내외 재원으로, 콘진원 정관에 근거하여 기본재산 등재('09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9년	총계
○ 지역민방 출연(5개사)	1,000	2,200	-	3,200
○ 2차 케이블SO 출연(24개사)	-	19,750	-	19,750
○ 구 공익자금 출연	-	-	4,500	4,500
계	1,000	21,950	4,500	27,450

※ 방송영상진흥재원 주요 연혁

- '97. 10. 31 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관 개정(기금설치 근거규정 마련) 및 방송진흥기금 관리 규정 제정
- '96. 5~'97. 11 '지역민방' 및 '종합유선방송 2차 SO' 허가업체 기금출연
- '99. 2~'99. 7 구 공익자금* 일부 출연
 - * 구 공익자금: '80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조성, 방송광고 영업 대행 수수료(광고비의 20%)를 재원으로 운용(한국방송광고공사(문체부 소관))되었으나, '00년 통합 방송법 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개칭(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방통위 소관)에서 운용 중))
- '09. 5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에 따른 정관 수립(기본재산 편입)
- '10. 6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에 따른 방송진흥기금 관리규정 제정
- '19. 12 명칭 변경(방송진흥기금→방송영상진흥재원)

○ (現 재원 조성 근거) 콘진원 정관 제2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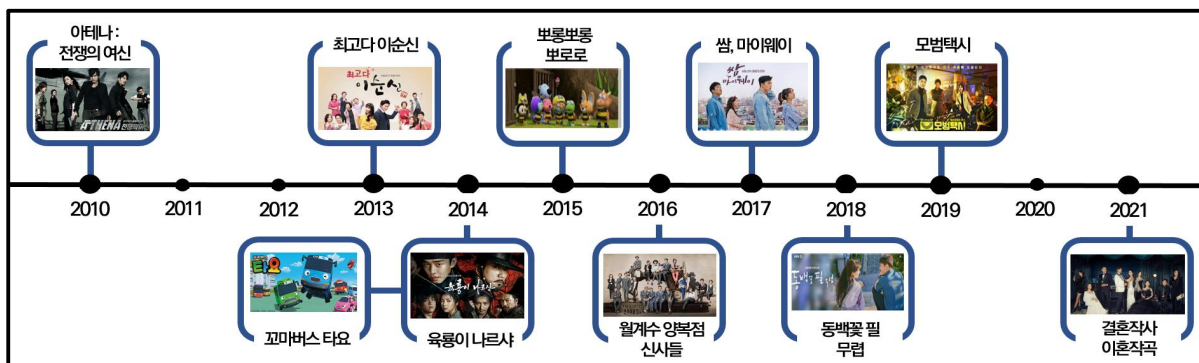
* 제24조(재산의 구분)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5. 방송영상진흥재원)

□ 방송영상진흥자원 규모 및 주요 사업

- (재원 규모) 28,642백만원('23.12월 말 가결산 기준)
- (주요 사업) 재원의 약 50% 규모씩 격년으로 용자 사업 추진
 - ▲프로그램 제작, 시설 구축, 경영 지원 등 용자 지원(방송영상제작사, 케이블 TV 업계/약 130억원),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포럼 개최 등(약 2억원)

구 분	방송영상진흥자원 용자지원	이자	
		용자지원 운영	방송영상콘텐츠 연구조사
사업 목적	-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 및 케이블 TV업계 등에 저리 자금 공급을 통한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 용자 지원 사업 운영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연구, 분석, 세미나 개최 등)
주요 내용	- 용자 지원(프로그램 제작자금,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 운영위 개최 등 사업 운영 실비(16백만원) - 한국케이블TV 방송 협회 지원(70백만원)	- 방송영상콘텐츠 연구조사 추진(방송콘텐츠산업포럼, 현안세미나, 포럼 등)
기간	2023. 1. 1. ~ 12. 31.		
예산	총 13,295백만원		
	13,015백만원(기타)	86백만원(기타)	194백만원(기타)

- (주요 성과) '97년 용자 사업시행 이후 **총 2,480.2억원** 용자지원



<드라마> **얼어죽을 연애따위** - (주)스토리티브이



- (지원현황) 15억원 용자(2년 내외) 저리자금 대출 지원
- (주요성과)
 - MZ세대(2039) 시청률 전체 1위
 - 글로벌 OTT 라쿠텐비키 미·영·프랑스 주간 Top2
 - 2022.10.05~12.01 16부작 ENA 편성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 3** - (주)지담미디어



- (지원현황) 10억원 용자(2년 내외) 저리자금 대출 지원
- (주요성과)
 - (시즌2) '21년 6월 ~ '21년 8월 TV조선 방영, 최고 시청률 16.6%
 - (시즌2) TV조선 드라마 최고 시청률 기록
 - (시즌3) '22년 2월 ~ '22년 5월 TV조선 방영, 최고 시청률 10.4%
 - (시즌3) 일본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10위 기록(2월 28일~3월 6일 기준)

참고 2

방송영상진흥재원 사업별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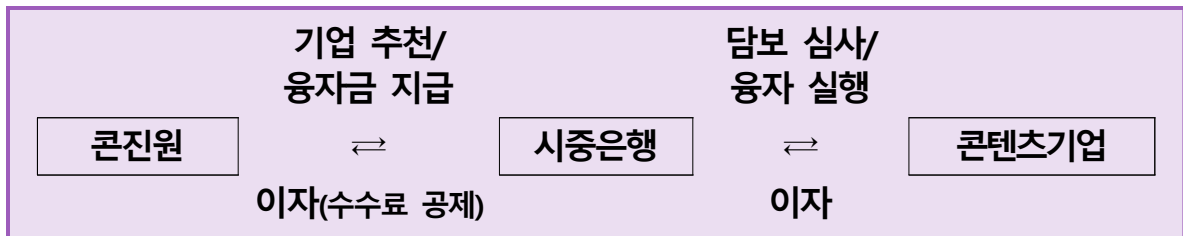
①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 융자 대상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 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한 대리 대출(신용·담보부 대출)

- 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씨티, 우리, 하나은행
- 대출보증 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 융자 운용규모 : 연간 13,000백만원 내외

○ 융자시행시기 : 상·하반기 1회(총 2회) ※ 필요 시 추가 공고 가능

○ 상품별 주요 현황

분야별	연간 대출 한도	대출한도	대출 기간	(최소 거치기간) *	연 이자율			
					기준금리			우대금리 적용 하한 (최저금리)
					합계	은행 수수료	콘진원	
- 프로그램 제작자금	130억원	프로젝트별 15억원	2년	1년	2.2%	1.0%	1.2%	1.8%
- 시설구축 자금		기업별 연간 5억원		-				
- 경영지원 자금								

*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율상환 가능

* 차년도 사업 추진시 세부사항 변경될 수 있음

② 방송영상진흥재단 융자지원 운영(이자) 사업

○ 사업 목적

- 방송영상진흥재단 융자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
- 케이블TV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지원

○ 사업 내용

- 방송영상진흥재단 운영위원회 및 융자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운영 실비 및 사업 부대 비용 지급(16백만원)
- 케이블TV방송대상(KCTA Show) 개최 지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간접교부) (70백만원)

○ 추진 일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편성 : 1월
- 융자지원 사업자 모집/선정 관리, 융자심의 등 : ~ 12월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CTA Show 지원 : ~ 11월
- 차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승인 : ~ 12월

③ 방송영상콘텐츠 연구조사(이자) 사업

○ 사업 목적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국내외 주요 현안과 트렌드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 및 산업 고객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 정책 기초자료 확보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사업 내용

- 방송트렌드&인사이트 매거진 발간(연 4회) (77백만원)
- 방송영상 리더스포럼 운영(격월) (40백만원)
- 방송영상콘텐츠포럼 개최(연 1회) (20백만원)
- 방송영상콘텐츠산업 현안세미나 개최 지원(연 2회) (38백만원)
- 사업 추진 운영비(19백만원)

참고 3

방송영상진흥자원 출연기관 개요

(‘22년 기준)

구 분		최초 출연기업명	비고
지역민방 출연 (5개사)	TV	청주방송(CJB)	-
		전주방송(JTV)	-
		울산방송(UBC)	-
		인천방송(iTV)	현 경인방송
	FM	경기방송(KFM)	폐국
2차 케이블SO 출연 (24개사)	경기	(주)아름방송네트웍	-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현 딜라이브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현 SK브로드밴드
		드림씨티방송주식회사	현 LG헬로비전
		(주)한빛아이앤비	현 SK브로드밴드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	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TV경동방송	현 딜라이브
		한국케이블TV기남방송	현 SK브로드밴드
	강원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TV원주방송	현 LG헬로비전
	충북	주식회사 씨씨에스	-
	충남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	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현 CMB
	전북	한국케이블TV금강방송	현 KCN금강방송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현 LG헬로비전
	전남	한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	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TV전남방송	현 CMB
	경북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현 현대HCN
		한국케이블TV신라방송	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TV영남방송	현 LG헬로비전
	경남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	현 JCN 울산중앙방송
		한국케이블TV금양방송	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TV마산방송	현 LG헬로비전
		(주)서경방송	-